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5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김희정·고동진·안상훈

송언석 · 김소희 · 강승규

이성권 · 김미애 · 김은혜

조은희 • 백종헌 • 최은석

강선영 • 한지아 • 조배숙

조지연 · 이양수 · 유용워

이만희 · 최수진 · 박정훈

서명옥 · 나경원 · 서일준

정연욱 · 임종득 · 김예지

송석준 · 김대식 · 박상웅

정성국 • 신동욱 • 최보유

이달희 의원(3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견제와 균형, 여야 협치로 운영되어야 할 대한민국 국회가 거대 정당이 출현한 21대 국회부터 원 구성 때마다 의석수를 앞세운 다수당이 힘과 진영논리로 국회의 의회민주주의와 여야 협치의 전통을 훼손하고 있음.

특히, 국회의장을 배출한 거대 정당이 상임위 배분에 있어 법제사법 위원장을 맡는 것은 정당 간 견제와 균형, 협치의 국회 운영 원칙과 정신에 위배되는 일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 아닌특정 정당의 소속기관으로 전락시키고 그간 쌓아온 협치의 국회 운영전통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함. 따라서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소속 상임위원이 맡도록 하는 것이 순리임.

또한, 국회 운영위원장 역시 여당이 맡는 것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관례임. 이는 국회와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 측면을 고려한 역대 국회의원들의 경험과 지혜의 산물임. 국정운영의 최고기관인 대통령실 업무를 다루고 국회 운영 규칙을 정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기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회운영위원회는 정치 공세의 장이 되거나 특정 정당의 힘과 진영논리에 그 운영이 좌우되어서는 안 됨. 따라서 국회 운영 전통과 관례와 직무의 성격 등을 반영하여 국회와 국정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중시하는 여당이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한 순리임.

또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역시, 원내 정당간 의석 비율을 반영하여 배분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전통이자 관례이고,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운영은 물론, 총선 민심에 부합하는 국회 운영임.

이에 국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여당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 중원내 다수 정당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배분은 교섭단체 의석 비율을 반영하여 배분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견제와 균형의 의회민주주의를 확립시키려는 것임(안 제41조).

또한 현행법에 따라 안건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경우 위원회는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9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여·야간의 대화와 원만한합의를 강조하고 있는 의회 정치의 근본적인 가치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을 국가안보, 외교 또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안건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 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제한하고, 위원회에서 신속처 리대상안건 처리 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를 거처 처리되도록 하여 다수 정당의 안건신속처리제도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제48조제1항부터"를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며, 제48조제1항부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의 경우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은 의장이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이 아닌 정당 중 의원 수가 가장많은 정당의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85조의2제1항 전단 중 "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국가안보, 외교 또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안건
- 2. 제58조의2에 따라 송부된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 따라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안건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이내에 마쳐야한다. 이 경우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심사를 마치려면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생 략)	제41조(상임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	②교섭단체 소		
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	교섭단체에 배분하며, 제48조제		
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	<u>1항부터</u>		
에서 선거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제2항의 경우에 국회운영위		
	원회의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상		
	임위원장은 의장이 제2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		
	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이 아닌		
	정당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u>안건(체계·</u>	<u>안건(체계·</u>		

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 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 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 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 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 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 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u><신 설></u>

<신 설>

<u>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u>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				
1. 국가안보, 외교 또는 경제위				
기와 관련된 안건				
2. 제58조의2에 따라 송부된 헌				
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 따라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 ⑧ (생 략)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 요한 안건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이 경우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심사를 마치려면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야 한다.

④ ~ ⑧ (현행과 같음)